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 조 및 정관 제 18 조에 의거하여 제 9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 년 03 월 23 일(월요일) 오전 10 시 00 분

2. 장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남로 75 번길 15, 에코프로머티리얼즈 3 층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나. 결의사항

- 제 1 호 의안 : 제 9 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제 3 종 상환전환우선주 1 주당 1,139.61 원)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 호 : 이사 선임 및 보수관련 변경의 건
 - 제 2-2 호 : 기타 변경의 건
-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5 인)
 - 제 3-1 호 : 사내이사 이규봉 선임의 건
 - 제 3-2 호 : 사내이사 이성준 선임의 건
 - 제 3-3 호 : 사내이사 김관후 선임의 건
 - 제 3-4 호 : 사외이사 엄종규 선임의 건
 - 제 3-5 호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분리선출,2 인)
 - 제 4-1 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선영 선임의 건
 - 제 4-2 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수 선임의 건
-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영석 선임의 건 (1 인)
- 제 6 호 의안 : 등기이사보수규정 제정의 건
- 제 7 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대리행사 : 위임장 원본(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식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일 이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03월 13일 09:00 ~ 2026년 03월 22일 17:00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3)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

당사는 상법 제 542 조의 4 및 정관 제 19 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5일

주식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김병훈 (직인생략)

[별 첨]

□ 제 1 호 의안 : 제 9 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제 3 종 상환전환우선주 1 주당 1,139.61 원)

배당구분	배당종류	배당대상주식	1주당 배당 금액/주식수	배당 기준일
결산배당	현금배당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에코프로머티 3우)	1,139.61원	2026.03.31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 호 : 이사 선임 및 보수관련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 26 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u>3명 이상으로</u> 하고, <u>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u> 하되 <u>이사총수의 과반수로</u> 한다.	제 26 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u>3명 이상 7명 이내로</u> 하고, <u>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u> 하되 <u>이사총수의 과반수로</u>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u>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보선한다. 이 경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보선의 경우에도 제 27 조 제 2 항을 적용한다.</u>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3 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u>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 26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3 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반영 이사회 운영 효율성 및 연속성 도모
제 3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u>보상위원회에서 검토 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u>	제 3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u>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등기이사보수규정을 따른다</u>	등기이사 보수규정 제정 반영

- 제 2-2 호 : 기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 23 조 (의결권) (중략) ② 주주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매 주주총회마다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권) (중략) ② 주주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매 주주총회마다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반영

<p>제 26 조 (이사의 수)</p> <p>②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 26 조 (이사의 수)</p> <p>②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 28 조 (사외이사 등 후보의 추천)</p> <p>①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사외이사</u>를 포함한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u>사외이사</u> 등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 28 조 (독립이사 등 후보의 추천)</p> <p>①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독립이사</u>를 포함한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u>독립이사</u> 등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p>	<p>개정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반영</p>	
<p>제 34 조의 2 (위원회)</p> <p>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컴플라이언스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p>(이하 생략)</p>	<p>제 34 조의 2 (위원회)</p> <p>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 2.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컴플라이언스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p>(이하 생략)</p>		
<p>제 35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 정관 제 34 조의 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u>사외이사</u>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사외이사</u>로 한다.</p> <p>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u>사외이사</u>가 아닌 <u>감사위원회</u>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p>	<p>제 35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 정관 제 34 조의 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u>독립이사</u>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독립이사</u>로 한다.</p> <p>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개정 상법 제 542 조의 8 (독립이사의 선임) 및 개정 상법 제 542 조의 12 (감사위원회 구성 등) 반영</p>

<p>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p>	<p>(이하 생략)</p>	
<p>(신설)</p>	<p>부칙(2026.3.23.) <u>제 1 조(시행일)</u> 이 정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u>제 2 조(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u> <u>제 23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 3 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u> <u>제 26 조, 제 28 조, 제 34 조의 2, 제 35 조(제 3 항 및 제 4 항은 제외)</u>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u>제 4 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u> <u>제 35 조 제 4 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p>	<p>개정 상법 시행일 적용</p>

□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5 인)

- 제 3-1 호 : 사내이사 이규봉 선임의 건
- 제 3-2 호 : 사내이사 이성준 선임의 건
- 제 3-3 호 : 사내이사 김관후 선임의 건
- 제 3-4 호 : 사외이사 엄종규 선임의 건
- 제 3-5 호 :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신규선임여부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 여부	직책구분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규봉	1970.04.07	신규선임	사내이사	2년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이성준	1975.09.16	신규선임	사내이사	2년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관후	1975.06.01	재선임	사내이사 (직원이사)	1년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엄종규	1962.05.15	재선임	사외이사	3년	계열회사 임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김영석	1971.03.19	신규선임	사외이사	3년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규봉	(주)에코프로머티 부사장	1996 1996~2018 2018~2020 2021~ 2025 2025~현재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 학사 삼성 SDI 연구소 전략기획 부장 에코프로비엠 연구기획담당장 상무 에코프로이엠 사업운영본부장 전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COO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이성준	(주)에코프로머티 상무	2026 2003~2009 2009~2017 2018~2019 2019~2024 2024~현재	울산과학기술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영학 석사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STX 중공업 에코프로비엠 전략기획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략기획팀장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무	해당사항 없음
김관후	(주)에코프로머티 설비기술팀 정비반 직장	1994 1993~2003 2004~2015 2016~2017 2017~현재	대양공업고등학교 삼성 SDI 생산팀 한국유미코아 신소재 생산반장 에코프로비엠 포항 JV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비기술팀 정비반 직장	해당사항 없음
엄종규	변호사	1991 1991~1993 1993~2008 2008~2010 2010~현재 2022~2023	경북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22 기) 대구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	해당사항 없음
김영석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2019~2022 2019~현재 2022~현재 2024~현재 2025~현재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석좌교수 포스텍 스포츠 인공지능 융복합대학원 책임교수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겸임교수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규봉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성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관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엄종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영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분리선출,2 인)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신규선임여부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 여부	직책구분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선영	1972.01.21	재선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3년	계열회사 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성수	1968.07.19	신규선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3년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선영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교수	2005 2016~2024 2017~2018 2023~2025 2020~현재 2008~현재	경북대학교 회계학 박사 경북대학교 장학회 감사 경북대학교 재정부처장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해당사항 없음
김성수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1995~1997 2010~현재 2022~현재 2023 2025~현재	삼성 SDI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BK21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단장 한국전지학회 회장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원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선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성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영석 선임의 건 (1 인)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신규선임여부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 여부	직책구분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석	1971.03.19	신규선임	사외이사	3년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영석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2019~2022 2019~현재 2022~현재 2024~현재 2025~현재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석좌교수 포스텍 스포츠 인공지능 융복합대학원 책임교수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겸임교수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영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 6 호 의안 : 등기이사보수규정 신설의 건

당사는 공정한 임원 보상정책(보수 산정기준, 절차 등) 수립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기반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등기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p><등기이사보수규정></p> <p>1. 목적 등기이사보수규정(이하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의 한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등기이사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기이사 보수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법령,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규정 및 임원위임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p> <p>3. 용어의 정의</p> <p>3.1 등기이사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이사를 말하며, 사내이사, 독립이사(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다.</p> <p>3.2 보수 등기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기본급,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

4. 책임 및 권한

4.1 주관부서장

주관부서장은 HR팀장으로 하며, 본 규정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도하고 본 규정의 제·개정을 준비·검토할 책임이 있다.

4.2 연관부서장

연관부서장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본 규정 사항에 의한 이사회 의결 등을 준비·수행할 책임이 있다.

5. Rule

5.1 보수액의 확정

개별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회사의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 등기이사의 업무 실적과 능력 및 담당 업무의 중요도, 동종/동급 기업의 등기이사 보수 수준,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1.1 사내이사의 보수액

사내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임원위임계약서상의 보수액 및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5.1.2 독립이사의 보수액

독립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5.1.3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액

기타비상무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임원위임계약서상의 보수액 및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5.1.4 등기이사 보수 총액의 한도

모든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를 합산한 총 한도(이하 "보수 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모든 사내이사과 독립이사의 연간 보수액을 합산한 총액은 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2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시기

5.2.1 보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에 등기이사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2 등기이사가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2.3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6. 기타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단, 보수 한도의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1 본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등기이사의 보수는 본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2.2 본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는 새로운 보수 한도를 정하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제 7 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3. 용어의 정의</p> <p>3.1 임원 본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u>인사발령에 의한 상무 이상 임원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u></p> <p>3.2 주관부서 <u>회사 내 기획업무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u></p> <p>3.3 연관부서 회사내 <u>임원 퇴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u>를 말한다.</p>	<p>3. 용어의 정의</p> <p>3.1 임원 본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u>회사와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EP, 명인), 상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의 직위를 부여 받아 회사에 상근하며 회사가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집행 책임자를 말한다.</u></p> <p>3.2 주관부서 <u>본 규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의 확정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내 HR 업무부서를 말한다.</u></p> <p>3.3 연관부서 <u>회사내 임원퇴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u>를 말한다.</p>	<p>회사내 제도 개편으로 - '전문가(EP, 명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용대상 추가</p> <p>- 2026년부터 전무 직위는 부사장으로 통합</p> <p>담당부서 변경 '관계사'를 '계열회사'로 문구 수정</p>															
<p>5. Rule</p> <p>5.1 퇴직금 산정</p> <p>5.1.1. <u>회사 및 그룹내 관계사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u></p> <p>5.1.2.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직급</td> <td>상무</td> <td>전무, 부사장</td> <td>사장, 부회장, 회장</td> </tr> <tr> <td>지급률</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직급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5	<p>5. Rule</p> <p>5.1 퇴직금 산정</p> <p>5.1.1. -----<u>에코프로그룹(이하 "그룹")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이하 "합산 재임기간")이</u> -----</p> <p>-----.</p> <p>5.1.2. -----</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직급</td> <td><u>전문가(EP, 명인), 상무</u></td> <td>부사장</td> <td>사장, 부회장, 회장</td> </tr> <tr> <td>지급률</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p>※ 전무직위는 부사장으로 통합</p>	직급	<u>전문가(EP, 명인), 상무</u>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직급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5														
직급	<u>전문가(EP, 명인), 상무</u>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지급률	3	4	5														

